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6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성회・이기헌・백승아

윤종군 • 진선미 • 이재관

안태준 • 민병덕 • 이인영

고민정 • 서미화 • 한창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이에 가입할 수 없고,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,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집단행위를 원칙적·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영국·미국·일본·프랑스·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,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 를 확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(안 제65조제1항 삭제).
- 나.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(안 제66조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860호),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1호),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63호), 「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제60조부터 제67조까지"를 "제60조부터 제65조까지, 제67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65조와 제66조를"을 "제65조를" 로 한다.

제6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과 제2항에"를 "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를 삭제한다.

제84조의2 중 "제44조·제45조 또는 제66조"를 "제44조 또는 제45조"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4항 중 "처하고,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"를 "처한다"로 한다.

②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제64조제1항,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 조제1항 본문"을 "제64조제1항, 제65조제2항 및 제3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범위) ① 특수경력직	제3조(적용 범위) ①
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	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	
으면 제33조, 제43조제1항, 제4	
4조, 제45조, 제45조의2, 제45조	
의3,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,	
제50조의2, 제51조부터 제59조	
까지, 제59조의2, <u>제60조부터</u>	제60조부터
<u>제67조까지</u> , 제69조, 제84조 및	제65조까지, 제67조
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	
적용한다.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	2
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	
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	
적용하지 아니하고,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	
대하여는 <u>제65조와 제66조를</u>	<u>제65조를</u>
적용하지 아니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 ① 공	제65조(정치 운동의 금지) <u><삭</u>
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	<u>제></u>
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	
에 가입할 수 없다.	

- ② (생략)
-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,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
- 제66조(집단 행위의 금지) ① 공 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 만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은 예외로 한다.
 -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③
제2항에
<u><삭 제></u>

<u><삭 제></u>

제84조의2(벌칙) <u>제44조·제45조</u>	제84조의2(벌칙) <u>제44조 또는 제4</u>
<u>또는 제66조</u> 를 위반한 자는 다	5조
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	
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	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